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문성호 의원 (국민의힘, 서대문2)

□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과 최유희·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입니다.

□ 본 건의안은 최근 지능화·기업화되고 있는 조직폭력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근본적인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현재의 조직폭력은 불법 사금융, 마약, 유흥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는 지자체가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미비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의 과태료는 조직폭력의 재진입을 막기에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조직폭력 범죄의 경제적 질식과 실효성 있는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에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계약 및 인허가 심사 시 해당자가 조직폭력 관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폭력 연루로 폐쇄된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동일 업종의 재입점을 제한하는 '장소 기반 영업 금지' 규정을 관련 사업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아울러 조직폭력 범죄를 방조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대폭 상향함으로써 징벌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조직 탈퇴자와 내부 제보자가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원 변경 지원 및 국가 차원의 긴급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등의 개정을 함께 촉구합니다.

□ 조직폭력 범죄의 근절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자체의 행정적 차단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범죄 세력의 경제적 토양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한 절실한 요구입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